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,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건강진단결과서(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)
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
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제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제10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건강진단결과서(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)
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(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
제99조제6호 중 “제7호아목”을 “제7호”로, “2014년 1월 1일”을 “2022년 1월 1일”로 하고, 제8호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67조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: 2022년 1월 1일

별표 12 제6호나목1) 중 “(순대류만 해당한다)”를 “(순대류만 해당한다), 신선편의식품, 간편조리세트”로 한다.

별표 14 제4호가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)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같이 할 경우로서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(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

한다)을 같은 적재고 시설에 구별하여 보관·운반하는 경우에는
 는 그 적재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별표 14 제6호나목1)가) 중 “구분하여”를 “함께”로 한다.

별표 17 제7호저목 전단 중 “제과점영업자”를 “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자”로, “빵류”를 “빵류, 과자, 떡류”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구입하였다”를 “제조한 제품을 구입하였다”로 한다.

다만,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지역 중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하여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 조리·제조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17 제8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·조리 또는 보관(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해서는 안 된다.

하.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.

별표 23 I 제13호 중 “즉석판매제조·가공업”을 “식품제조·가공업(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처분만 해

당한다)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”으로 하고, 같은 I 제15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I 제17호를 삭제한다.

차.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(CCTV)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. 다만,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.

별표 23 II 제3호의 표 제10호나목1) 중 “차목 또는 카목”을 “차목, 카목 또는 파목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품정보	품목의 특성	
	▪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 ▪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 ▪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[]영양성분 조절제품 []경도 조절제품 []점도조절 제품 []해당없음 ▪ 기능성표시식품의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 ▪ 살균·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[]비살균 []살균 []멸균	

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부서류	1. 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.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- 양도의 경우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- 상속의 경우: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- 그 밖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교육이수증(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삭제 <2020. 4. 13.> 5. 위임인의 자필승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(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	

2.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. (생략)	2.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경우에는 ----- ----- ----- -----
나. 상속의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	다. (현행과 같음)
다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3.·4. (생략)	⑪ 제10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<신설>	1. 건강진단결과서(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)
	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⑪ (생략)	⑫ (현행 제11항과 같음)

제99조(규제의 재검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9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삭제	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삭제	
6.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아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자(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)의 준수사항: 2014년 1월 1일	6. ----- 제7호----- ----- ----- ---- 2022년 1월 1일
7. 삭제	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삭제	
<신설>	10. 제67조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: 2022년 1월 1일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2011